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27호

'25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공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기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22명(일근 10명 / 교대근무 12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지원코드	채용분야	인원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무부서 (근무지)
청사A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1명	일근근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실내체육관 청사방호, 경비 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사B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6명	교대근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방호 (실내체육관 포함)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 부산 동구 좌천동 (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사C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2명	일근근무	사천해양경찰서 청사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사천해양경찰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청사D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2명	일근근무	통영해양경찰서 청사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통영해양경찰서 (경남 통영 광도면 죽림리)
청사E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3명	교대근무	통영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통영해양경찰서 전용부두 (경남 통영 광도면 동호동)
청사F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2명	일근근무	창원해양경찰서 청사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청사G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1명	일근근무	부산해양경찰서 및 중앙특수구조단 청사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부산해양경찰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청사H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3명	교대근무		
청사I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2명	일근근무	울산해양경찰서 청사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울산해양경찰서 (울산 남구 선암동)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 3배수 이하]** 자격요건에 적합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 3배수 초과]**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5. 5. 12.(월)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원서접수	'25. 5. 12.(월) ~ 5. 22.(목)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 : 5. 22.(목) 18:00까지 * 응시번호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6. 5.(목)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5. 6. 11.(수) ~ 6. 12.(목)	▶ 면접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5. 6. 18.(수)	▶ 개별통지 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근무시작일	'25. 7. 1.(화)	

※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나. 18세 이상인 자(2007.12.31.이전 출생자)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라.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구 분	내 용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p>※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p>
우대요건	<p>① 자격요건 외 자격증 소지자 ② 직무관련 경력자(연차별 차등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무도단체는 공고문 참고)

○ 가점사항

구 分	부가 점수
법정 가점	<p>「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p>

※ 법정가산은 4명 이상 채용하는 청사B(남해청 청사방호 교대) 분야만 적용

○ 우대 및 가점사항(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 시 적용)

구 分	항 목	내 용	
우대요건 (60점)	관련 근무경력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개월 수 × 0.5점 <p>* 경력(재작)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p> <p>** 응시자격요건 근무경력은 제외</p>
	자격증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5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5점)
가점사항 (10점)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본인: 10점(각족 5점)

유의사항

-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갈 음하되 세부적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보완하여 증빙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선발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까지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20점), 2. 직무수행 계획서(20점)
3. 우대요건(60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50),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10)
4. 가산사항(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만점 배점 외 추가 가산

○ 2차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청사방호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시 ① 1차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②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순위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2025. 7. 1. ~ 2026. 6. 30.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임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방법 : 일근, 교대근무

급여체계

1. 기본급 : 직무등급 2등급 1단계 급여(2024년 기준 2,091,530원)
2. 정액수당 : 급식비 140,000원/월
3. 기타
 - . 명절상여금(년 1,100,000원),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직무의 범위

<청사방호>

- 가.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물품 반입 · 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나.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지원

<경비업무지원>

- 가.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 나.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 다.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민원업무>

- 가.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기관 방문객(민원인) 안내 및 응대

<기타>

- 가. 그 밖에 기관의 경비 · 방호 · 민원을 위해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응시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5. 12.(월) ~ 5. 22.(목) 18:00 <10일간>

○ 접수처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 주소 : 부산 동구 충장대로 32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7호 서식>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8호 서식>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9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미기재시 경력 미인정**)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必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템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3] 서류봉투 겉면 부착**

8.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51-663-2416, 2616)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 서류

지원분야(지원코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간제근로자 (청사 A)			

■ 작성 및 제출 목록(총괄표)

구분	작성여부
1. 응시원서 (필수)	
2. 자기소개서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필수)	
7.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필수)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수)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11.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당자만) ※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서류 등	
1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여부란에 “O” 표시
- *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고, 좌측상단에 집게로 고정(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코드	<input type="checkbox"/> 청사A	<input type="checkbox"/> 청사B	<input type="checkbox"/> 청사C	<input type="checkbox"/> 청사D	<input type="checkbox"/> 청사E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input type="checkbox"/> 청사F	<input type="checkbox"/> 청사G	<input type="checkbox"/> 청사H	<input type="checkbox"/> 청사I				
성명	(한글)					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한자)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현주소 (거주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복수국적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3.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	직무	근무기간	직무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응시번호는 미기재, 지원코드 반드시 선택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추후 통보)**
 -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접수사항, 면접시험 수험번호 등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보 예정 >
 - ③ 자격 :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
 - ④ 경력 :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청사방호직) / 청사A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청사방호직) / 청사A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자격증 및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본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 | |
|--------------------------|------------------|
| ▪ 성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 e-mail * | |
| ▪ 직장
▪ 직위 | |
| ▪ 직장전화 | ▪ 연락팩스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별지서식 제7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명

목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서식 제9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u>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리,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u>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u>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5년 월 일

생년월일

.

지원자

(서명)

<별지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1] 면접시험 기준표 및 평정표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유도회 - 대한택견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크라쉬연맹 '24.1.1. 인정 취소 - 대한검도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기도회 - 대한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대한합기도연맹 - 국제연합기도중앙협회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특공무술협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세계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한국특공무술협회 - 세계용무도연맹 - ITF태권도협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재남무술원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대한국술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총협회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국제연합기도연합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국제당수도연맹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무에타이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국술원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한국무예진흥원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대한검도연합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사) 한국권투협회 - (사) 한국킥복싱협회 - 대한특전무술협회 - 경찰무도교육원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한국복싱협회 - 세계합기도연맹 - (사) 대한삼단봉협회 - (사)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세계태권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사) 한국권투협회 - (사) 한국킥복싱협회 - 대한특전무술협회 - 경찰무도교육원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한국복싱협회 - 세계합기도연맹 - (사) 대한삼단봉협회 - (사)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1.27 신규 인정 '24.1.17 신규 인정 '24.3.8 신규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 택견보존회		

* '23.1.26.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한국복싱협회, 세계합기도연맹

* '23.12.31.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1) : 대한크라쉬연맹

[붙임2]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지
*지원 기관명	* 공고문 中 채용지 참조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청사방호 업무 <input type="radio"/> 경비업무 지원업무 <input type="radio"/> 민원업무 <input type="radio"/>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input type="radio"/> 업무이해력,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시하는 자세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지식 <input type="radio"/> 시설물 안전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지식 등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국가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input type="radio"/>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input type="radio"/> 대한민국 국적 소지, 병역을 필 또는 면제 <input type="radio"/>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적용을 받지 않는 자 <input type="radio"/>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관련분야 근무경력 <input type="radio"/>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가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취업보호(지원)대상자(독립·국가유·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붙임3]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곁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 발송

[보내는 사람]

응시구분	기간제근로자 (응시코드)
성명	
휴대폰	



25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5. 5. 12.(월) ~ 5. 22.(목)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2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051] 663 - 2416/2616]

등기 발송증 부착

